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2호~제7-5호)

[제7-2호]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지침

[제7-3호] ODA 통계기관 선정방안

[제7-4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7-5호]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

2010. 10. 25

국무총리실

목 차

[제7-2호]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지침 1

[제7-3호] ODA 통계기관 선정방안 15

[제7-4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21

[제7-5호]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 ... 29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2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지침**

2010. 10. 25

국무총리실

I

수립 배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10.7.26 시행)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규정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요

- (법적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 (수립주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주관기관 협조)
-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 (수립절차)

순서	내 용	주 체
1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 지침 마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리실)
2	분야별 기본계획안 초안 마련	주관기관 (재정부·외교부)
3	분야별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주관기관, 시행기관
4	분야별 기본계획안 제출	주관기관 (재정부·외교부)
5	분야별 기본계획안 종합작성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리실)
6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심의·조정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7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8	기본계획 시달(주관,시행기관/재외공관)	총리실, 주관기관

☞ 금년 중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기 위해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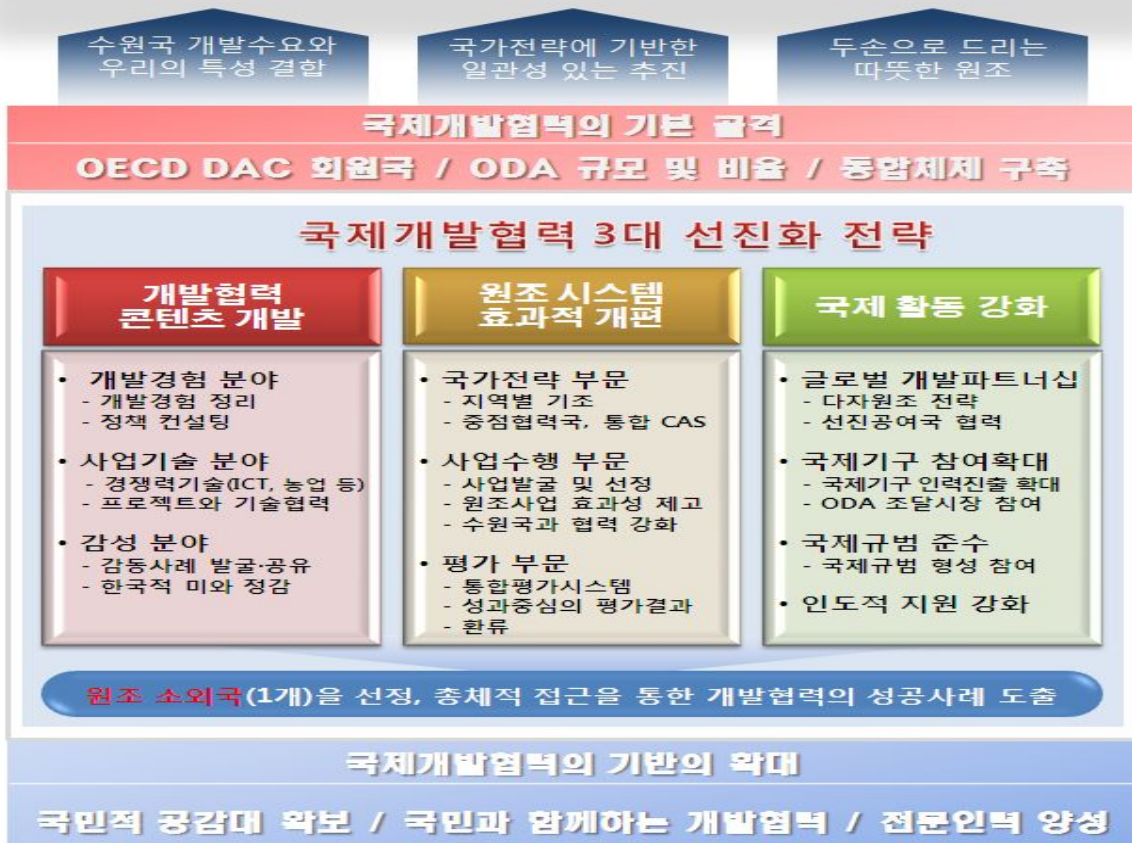
II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방침

1. 기본계획의 작성개요

- (대상기간) 2011~2015년(5개년 계획)
- (기본 틀 및 내용) 기본법 제정 이후 첫 기본계획인 점을 감안, 목표·규모·추진체계·제도·사업계획 전반을 대상으로 작성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기본방향과 주요항목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함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 따라서 '기본계획('11~'15)'은 'ODA 선진화 방안'의 기본 틀을 따르면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2. 분야별 기본계획 작성방향

- ◇ 양자분야 : 유상부문(재정부), 무상부문(외교부)
- ◇ 다자분야 : 국제금융기구(재정부), UN 등 기타기구(외교부)

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준수

- 기본방향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령의 기본계획관련 규정 준수
 - 원조규모 및 운용계획 유무상·양다자·비구속성 비율
 - OECD DAC 가이드라인, UN 등 기타기구의 논의 동향
- 주요과제 :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는 20개 세부과제(별첨)
 - *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무상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도 포함 가능

② ODA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작성

- 주관기관(재정부,외교부)은 시행령 제15조의 분야별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유무상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주관기관간에도 충분히 협의 하되 쟁점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총리실에서 조정

③ 성과 중심의 계획 작성으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 추진과제별로 가급적 구체화·계량화된 성과목표 제시
 -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이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제별 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
- ※ 기본계획 수립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조정

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운용계획

(1) 원조규모, 유무상 비율, 양다자 비율, 비구속성 비율

(2) 운용계획

- 전체 재원 운용의 기본 방향
- 재원의 지역별, 국가별, 분야별, 사업별 배분계획

(3) 주요사업의 추진방안

- 사업형태별
 - S/W 사업(개발조사, 정책자문 등), 프로젝트 사업, 초청연수, 봉사단 파견사업
 - * 유상의 경우 초청연수와 봉사단 파견사업은 제외
- 사업분야별
 - 사회분야 : 교육, 보건·의료, 농림, 행정, 수자원 등
 - 경제분야 :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재무 등
 - * Cross Cutting Issue

3. 국제개발협력의 3대 선진화 전략

① 개발협력 콘텐츠 구축 방안(과제 1-1, 재정부·외교부)

(1) 개발경험 분야(재정부)

- 총체적 개발경험 정리계획
- 8대 분야별 개발경험 정리계획
 - 추진체계, 정리대상 과제, 활용방안 등

(2) 사업기술 분야(외교부)

- ODA 사업기술 분야 개발계획
 - 추진체계, 개발대상 목록작성, 활용방안 등
 - * 8대 분야를 포함, 쏘부처청 KOICA/EDCF 및 공공기관 참여하에 추진

(3) 감성분야(외교부)

- 한국적 감성과 원조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방안
 - * 문화부, KOICA, EDCF 등과 협조 작성

(4) 원조모델 개발계획(재정부·외교부)

- 새마을 운동,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자보건 사업
 - * 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KOICA 등과 합동으로 작성

②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인 개편 방안

(1) 유무상 통합전략 수립

- 지역별 정책기조 및 자원배분 전략 (과제 2-1, 재정부·외교부)
 - 선진화 방안에는 있는 기본 방침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 * 외교부는 기타 무상부처와 지자체 사업을 포괄하여 계획 수립

-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가 중기지원 계획 (과제 2-2, 재정부·외교부)
 -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전체 및 국가별 지원 규모
 - 원조소외국 지원계획 및 추진방안
 - * 연차별 지원규모, 단계별 지원전략, 성과목표 등
- 유무상 통합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방안 (과제 2-3, 재정부·외교부)
 - CAS 수립세부절차, 연차별 CAS 수립 계획, 관계부처 의견 수립 방안 등 포함

(2) 사업수행체제의 선진화

- 사업발굴 및 선정과정 개선방안 (과제 2-4, 재정부·외교부)
 - KOICA 및 EDCF의 사업발굴 및 선정절차 시스템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 재정부 및 외교부, 일반부처, KOICA 및 EDCF간 역할정립
 - * 관계부처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과제 2-5, 재정부·외교부)
 - 유무상 연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정부와 민간 연계(PPP, NGO) 시범사업 추진계획
 - 패키지형 시범사업 추진계획(중점분야/중점지역)
- 개별부처와 원조집행기관(KOICA, EDCF)간 협조강화방안 (과제 2-6, 재정부·외교부)
- 수원국과의 협력강화 방안(과제 2-7, 재정부·외교부)
 - 수원국 협의절차 개선 방안
 - 3년 단위 지원계획(Rolling Plan) 시범추진계획
 - 수원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3) 평가역량 강화(과제 28, 재정부·외교부)

- 자체평가 추진계획
-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 구축

③ 국제협력 활동 참여 강화 방안

(1) 다자지원 확대계획 (과제 31, 재정부·외교부)

- MDB, UN 기구 등에 대한 연차별 다자지원 규모 확대계획 수립

(2) 다자원조 전략 수립(과제 32, 재정부·외교부)

- 중점분야 및 기구 선정, 분담금 납부체계 세부 개편방안, 관계부처 협의 강화 방안, 다자원조 평가 방안 등

(3) 선진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과제 33, 재정부·외교부)

- 유무상 통합협력 강화 방안, 원조분업 참여 확대 방안, 국제 기구 협력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등

(4) 국제원조규범 준수를 위한 실행방안 (과제 34, 재정부·외교부)

- 주요 원조규범 준수실적 평가계획 수립 등

(5) 국제원조규범 형성 관련 세부실행 방안 (과제 35, 재정부·외교부)

- 국제규범 형성 참여방안, HLF-4 추진 세부방안, 혁신적 재원발굴 계획 등 포함

(8) 인도적 지원 확대 세부방안 (과제 3-6, 외교부)

- 긴급구호 예산 확대계획, 긴급구호시스템 개선방안 등 마련

4 국제개발협력의 기반 확대 관련

(1) 유무상 통합홍보 추진방안 (과제 4-1, 재정부·외교부)

- 통합홍보체계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 맞춤형 홍보 세부방안 등

(2) 민관협력 확대방안 (과제 4-2, 재정부·외교부)

- NGO,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세부협력방안 마련
- 통계관리체계, 협의채널, 중점협력분야, 연구체계 등 포함

(3)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과제 4-3, 재정부·외교부)

- 인력 POOL 구축방안, 대상별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기관간 인력교류 확대방안 등

IV 행정사항

- 재정부와 외교부는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작성, 11월 15일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간사위원(국무총리실장)에 제출

- 제출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
* 이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제출

부처명	제출대상 분야별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 양자협력 중 유상협력 및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 관련 기본계획안
외교통상부	○ 양자협력 중 무상협력 및 다자협력 중 기타 국제기구 관련 기본계획안

- 선진화 방안에는 포함되나, 성격상 분야별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별도계획으로 작성·제출(참고2)
*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같이 제출

참고 1

선진화 방안 추진과제 정리

분류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① 개발경험 콘텐츠 구축 관련	1-1	개발경험 콘텐츠 활용 방안	재정부 · 외교부
	2-1	지역별 정책기조 및 자원배분 전략	재정부 · 외교부
② 원조시스템의 효과적인 개편 관련	2-2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가 중기지원 계획	재정부 · 외교부
	2-3	유무상 통합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방안	재정부 · 외교부
	2-4	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개선방안	재정부 · 외교부
	2-5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재정부 · 외교부
	2-6	개별부처와 원조집행기관(KOICA · EDCF)간 협조강화방안	재정부 · 외교부
	2-7	수원국과의 협력강화 방안	재정부 · 외교부
	2-8	원조평가역량 강화	재정부 · 외교부

③ 국제협력 강화 관련	3-1	다자지원 확대 계획	재정부 · 외교부
	3-2	다자원조 전략 수립	재정부 · 외교부
	3-3	선진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재정부 · 외교부
	3-4	국제원조규범 준수를 위한 실행방안	재정부 · 외교부
	3-5	국제원조규범 형성 관련 세부실행 방안	재정부 · 외교부
	3-6	인도적 지원 확대 세부방안	외교부
④ 국제개발협력의 기반 확대 관련	4-1	유무상 통합홍보 추진방안	재정부 · 외교부
	4-2	민관협력 확대방안	재정부 · 외교부
	4-3	전문인력 양성 방안	재정부 · 외교부

① 국제기구 우리인력 진출 확대 세부방안 (재정부·외교부)

- 연차별 목표(국제기구 근무인력, JPO, 여성인력 등), 국제기구별 추진전략 및 국내 지원체계 등

② 국제 ODA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방안 (재정부·외교부)

- 세부지원체계 구축 방안, 컨설팅 역량강화 방안 등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3호)

ODA 통계기관 선정방안

2010. 10. 25

국무총리실

□ ODA 통계기관 지정 추진배경

-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2010.1.25)
- **ODA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관리와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통계기관 지정**을 규정(제18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

-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분석·관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ODA 통계작성 체제

- 지금까지 통계법 및 통계청고시에 따라, 재정부가 ODA 통계 작성을 주관하고, 수출입은행이 실무를 담당
 -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 통계청 승인 제10202호('03.4.12)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재정경제부)'
- 수출입은행이 양허성차관 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KOICA의 무상원조 통계까지 총괄하여 관리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통계기관의 선정과 함께, 통계기관의 역할과 및 통계작성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II

통계기관 선정(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통계기관을 지정

가. 선정 기준

- DAC 통계에 대한 전문성, 경험 및 통계전문 인력 확보 여부
-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행 ODA 통계시스템의 활용·개선 가능성
 - * 우리의 DAC 가입실사 검토시 DAC는 우리의 현행 ODA 통계체계에 대해 기존 DAC 공여국의 개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높이 평가

나. 선정 검토

- 수출입은행은 지난 10여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DAC 통계 규정 및 ODA 통계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확보
 - DAC에 제출하는 통계 중 ODA 이외의 수출신용, 해외직접 투자 등도 수출입은행이 작성·관리
- 수출입은행은 'ODA 통계보고시스템('06년)'과 '국제개발통계 시스템('10년)'을 구축·운영중으로 시스템 활용의 경험 및 연속성에서 장점

☞ 전문성 및 시스템 관리능력 등을 감안, 수출입은행을 ODA 통계기관으로 지정

대분류	세분류	중요 내용
DAC 통계 개요	DAC 통계 의의	DAC 통계의 개요 및 목적
	DAC 통계 작성범위	재원: 자본이동(ODA, 자본거래, 민간지원 등) 수원국: DAC 분류 개도국(매 3년 조정) 양자 vs 다자: 직접 vs 국제기구 통한 간접 지원 약정 vs 지출: 자원약속 vs 재원 이전 구속성 vs 비구속성: 구매시 제한 여부
DAC 통계 주요항목	양자간 ODA	무상 :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협력 등 유상 : 차관, 출자
	다자간 ODA	적격 국제기구 출연 vs 출자 : 환급 여부에 따라 구분
DAC 통계 작성방법	DAC 통계 작성절차	시스템 입력 ⇒ 조회·출력 ⇒ 제출
	시스템 접속	통계보고시스템 접속 방법
	자료입력 - 양자간 ODA - 다자간 ODA	ODA 방식·분야·수원국별 시스템 form 입력방법
	조회·출력 및 제출	입력자료 확인 및 제출 방법
	통계 조회	시스템상 ODA 통계 조회 방법
참고자료	ODA 적격 수원국 목록	현재 DAC 고시 적격 수원국 현황
	지원분야별 분류 목록	DAC 통계 중분류·세분류 현황
	ODA 적격 국제기구 등 목록	ODA 적격 국제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 목록
	DAC 통계 주요용어	DAC 통계상 주요용어 해설
	정책 마커 및 리오 마커	정책 마커 : 특정 정책목표 연관성 표기 리오 마커 : 환경협약 관련성 표기
	증여율 계산방법	차관의 증여 환산비율 계산방법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4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2010. 10. 25

국무총리실

I

추진배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10.7.26 시행)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를 규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참고) 관계법령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기본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
 - 법령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개의(開議) 및 의결요건, 수당 지급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

(참고) 관계법령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할 필요

II

운영세칙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회의 개최 요건* 및 회의 개최 계획 통보(안 제2조)
 -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 제출 가능,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안 제3조)
 - 민간위원이 아닌 경우 대리 출석 및 의결권 보유(안 제4조)
 - 간사위원은 회의 일시·장소 등을 포함하는 회의록 작성, 회의 소집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대체가능(안 제5~6조)
 - 위원은 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밀 유지,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 가능(안 제7~8조)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10조)
 - 간사위원은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이 되고, 그 외 실무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운영세칙 안 제2~8조)을 준용

* 첨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안건의 제출)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6조(서면의결) ①위원장은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 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

제9조(간사위원) 영 제4조 제3항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 개발협력정책관으로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11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5호)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

2010. 10. 25

국무총리실

목 차

I. 추진배경	33
II. 국제개발협력 평가 추진방향	34
III. 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36
IV. 향후계획	39
※ 첨부1.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안)	40
첨부2.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안)	44

I

추진배경

- 지난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및 평가소위에 대해 규정
 - 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법 제13조)
 - ② 효율적인 평가수행을 위해 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에 일임(시행령 제12조)

(참고) 관계법령

- ◇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 ◇ 제12조(평가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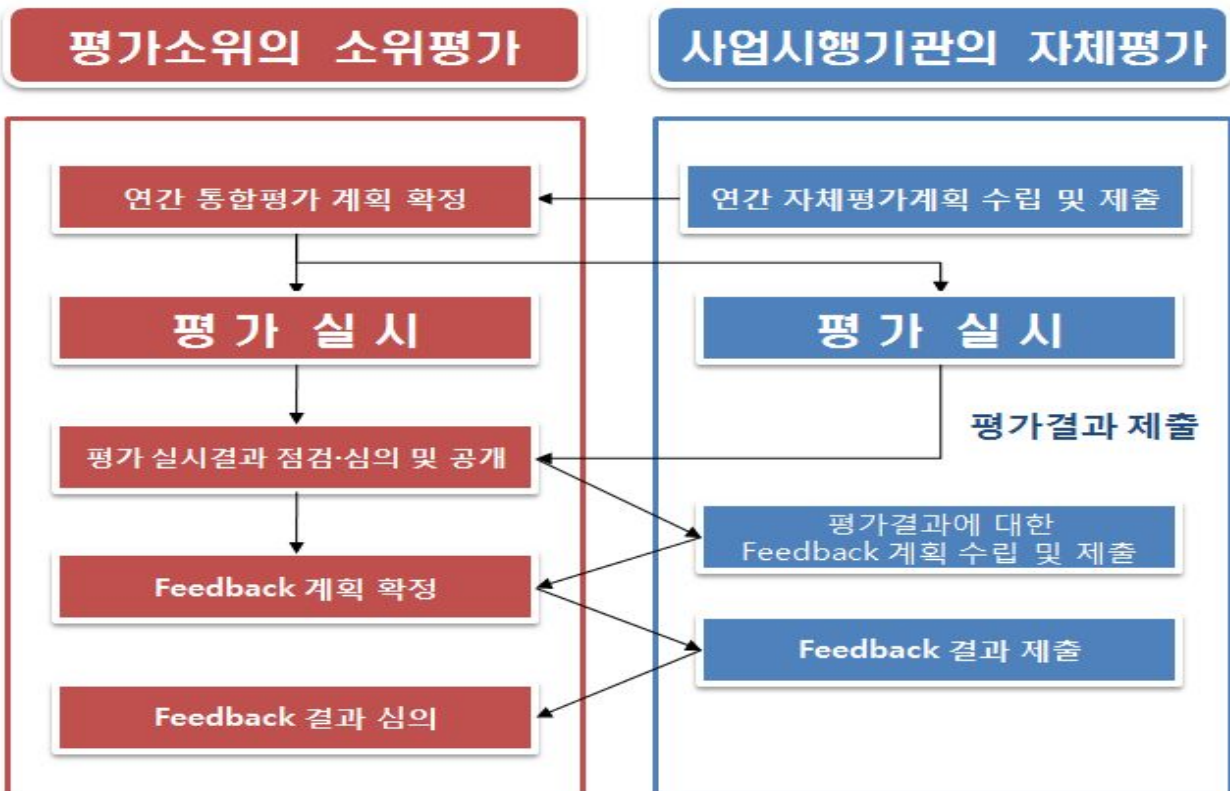
- ⇒ 금년부터 기본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통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을 마련
- 아울러, 기본법령에서 규정한 ‘평가 지침’ 및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
 - * 기본법 제정에 대비, 이미 평가소위를 구성하고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등 통합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므로 이를 기본법에 맞게 재구성

II 국제개발협력 평가 추진방향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객관적·통합적 평가체계 정립
- ◇ OECD DAC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원칙과 방법 적용

- (평가체계)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와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의 소위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자체평가 : 각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
 - 소위평가 : 평가소위원회가 정책 및 전략·국별·분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

< 통합평가 흐름 >



- (평가종류) 평가대상에 따라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시
 - 정책 및 전략 평가, 국별 평가, 분야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별 평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등

- (원칙·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원칙과 기준을 적용
 - 원칙 :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91년 채택
 - 기준 :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 (평가의 실효성 확보) 평가결과를 대상사업의 후속조치 및 유사사업의 발굴·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① 평가결과 통보 → ② 피평가자가 교훈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팀에 제출 → ③ 평가팀은 평가결과 활용실태 점검
 - 신규사업 추진 시 유사사업의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제안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

- (참여와 공개) 평가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를 통해 국민적 지지와 평가의 객관성 제고
 - 통합평가 시 수원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원국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등 참여적 평가를 강화
 - 평가보고서 공개범위 확대를 통해 원조사업의 책임성과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

☞ 위 내용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지침(안) 별첨)

Ⅲ 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회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평가소위 구성·운영
- ◇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소위에 자율권 부여

□ (기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임에 따라 평가업무 전담

- 평가소위 주관으로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개별 시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
- 평가소위는 주요 계획, 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소위의 평가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총 15명 이내

- 위원장(1) : 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
- 당연직 위원(5) : 총리실, 재정부, 외교부, KOICA, 수은 국장급
- 민간위원(9명 이내) :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임기 2년*)

* 현행 위원(7명)은 새로운 법령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는 잔여기간('12.7월)까지로 함

□ (평가협조기관) 평가소위의 평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유상) 및 외교부(무상)를 평가협조기관으로 지정

- 협조기관은 소관분야 각 시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보고

☞ 위 내용을 반영한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규정(안) 별첨)

< 참고 > '10년 평가 추진현황

□ 2010년도 평가계획 개요

- 금년 3월 평가소위원회에서 '2010년도 ODA 통합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소관기관별로 평가 실시 중
- (소위평가) 국별(캄보디아) 종합평가, 주제별(새마을운동 전수) 평가, 프로젝트(유무상연계사업) 평가 등 3개 평가 실시
- (자체평가) KOICA 등 12개 기관에서 16개 평가 실시

평 가 기 관		평 가 내 용	비 고
평가소위 소위평가 (3개 평가)		1. 국별 종합평가 : 캄보디아	*관계부처 합동
		2. 프로젝트 평가 : 유무상 연계사업	*관계부처 합동
		3. 주제별 평가 : 개발경험 전수(새마을운동)	*관계부처 합동
시행기관 자체평가	KOICA (4개 평가)	1. 국별평가 : 아시아, 아프리카, 구주·CIS	* 필리핀, 이집트, 우즈베크
		2. 형태별 평가 : 초청연수, NGO 지원	
		3. 주제별 평가 : 무상원조 수혜자 평가	
		4. 분야별 평가 : 페루 보건의료분야	
	수은(EDCF) (2개 평가)	1. 국별평가 : 베트남(유상지원사업)	
		2. 프로젝트 평가 : 2개국 3개 사업	
	개별부처 (10개 평가)	1. 기재부 : 개발경험공유(KSP) 사업 평가	
		2. 고용부 : 한-ILO 협력사업 평가	
		3. 농식품부 :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4. 방통위 : 수혜자 만족도 평가	
5. 행안부 : 프로젝트 평가(4건)			
6. 여성부 : 여성 IT 교육훈련 만족도 평가			
7. 교과부 : 프로젝트 평가(2건)		* 외부용역체결	
8. 지경부 : 프로젝트 평가(4건)			
9. 환경부 : 프로젝트 평가(2건)			
10. 복지부 : 모자보건 시범사업 평가		* 외부용역체결	

□ 소위평가 추진경과

< 평가소위 소위평가 >

- (‘10.1-3월) 평가관련 부처협의 및 연간 통합평가계획 수립
- (‘10.3월) 평가대상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10.4-5월) 평가대상별 국내문헌조사 실시
- (‘10.6-7월) 평가대상별 현장방문조사 및 중간보고
- 평가대상별 현장방문조사(6월) 및 중간보고 완료(7월)
- (‘10.8-9월) 평가결과 종합(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병행)
- (‘10.9월~)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참고) 2010년도 소위평가 추진일정표

주요일정 (‘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평가대상선정 (관계부처협의)									
연간계획수립 (평가소위개최)									
세부추진계획 수립									
국내문헌조사									
현지방문조사 중간보고									
전문가 의견수렴									
평가결과 종합									
최종결과보고서 (평가소위개최)									

< 시행기관 자체평가(심의) >

- ('10.1-2월) 평가관련 부처협의 및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 ('10.3월) 부처별 연간 자체평가계획 평가소위 승인
- ('10.3~10월)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 ('10.9월) 자체평가 진행과정 중간점검 (진행)
- ('10.11월)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 ('10.12월) 자체평가 결과 평가소위 심의 (예정)

※ (참고) 2010년도 자체평가(심의) 추진일정표

주요일정 ('10년)	1-2월	3-4월	5-6월	7-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계획수립 (평가소위개최)								
평가소위 승인								
자체평가 실시								
중간점검								
평가결과제출								
결과심의								
최종완료 (평가소위개최)								

IV 향후계획

□ 평가소위 소위평가 및 시행기관 자체평가 마무리

- (평가소위 소위평가) 시범소위평가 최종보고서 심의(11월)
⇒ 연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평가소위 평가보고서 상정
- (시행기관 자체평가) 협조기관 취합(11월) → 평가소위 심의(12월)

□ 금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지침 및 매뉴얼 보완(12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평가의 정의) “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실시기관) 영 제12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 및 사업시행기관이 지침에 따른 평가실시기관이 된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¹⁾

- 가.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91년 채택한 개발원조 평가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준용

- 다.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 마.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²⁾

- 가.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 나.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 다.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 라.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 마.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제3장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평가실시기관 중 사업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라 하고, 평가소위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소위평가”라 한다.

②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91년 채택한 개발원조 평가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준용

- 가.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 나.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 라.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 마.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 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 사.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제4장 평가의 시행

제7조(연간통합평가계획의 수립) ①사업시행기관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소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②평가소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평가계획과 소위의 연간 소위 평가계획을 종합하여 연간 통합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③평가소위는 수립한 연간 통합평가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평가실시기관은 이 지침, 제7조의 연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외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평가실시기관은 협력대상국 또는 타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①사업시행기관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②평가소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동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평가소위의 평가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①사업시행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지침 이전에 수립된 "2010년도 ODA 연간통합평가 계획"은 동 지침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폐지지침) 종전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은 폐지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소위원회 운영

제2조(기능) ①평가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국제개발협력 관련 통합평가정책 수립
2. 국제개발협력 통합 정책, 전략, 사업 및 국별 평가
3. 연간 통합평가계획 수립
4. 사업시행기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심의
5.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6. 기타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이 되고, 평가소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2.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이 되며, 평가소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평가소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에 의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평가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위원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평가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8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회의록) 평가소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10조(서면의결) ①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평가소위원회 활동이 어렵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협조기관

제13조(평가협조기관의 설치) 양자협력 중 유상협력 사업,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양자협력 중 무상협력 사업, 다자협력 중 기타 국제기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각각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으로서,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평가협조기관의 임무) ①협조기관은 시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소위원회에 보고한다.

②협조기관은 기타 평가소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과 협조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위임)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평가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만료일(2012.7.31)까지로 한다.

